

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법규운영기준

예비후보자 제도 도입

1.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의례적 내용으로 자신의 직·성명, 사진이 포함된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는 것이 허용되는지

⇒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통상적인 계기가 있는 때에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과 자신의 직·성명(사진 포함)이 게재된 문자메시지, 연하장 등을 '예비후보자 등록 전'에 발송하는 것은 위탁선거법(이하 '법'이라고 함)상 제한되지 않음.

※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을 반영하여 선례에서 '선거기간 전' 허용하는 행위를 사례에 따라 '예비후보자 등록 전'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 운영함.

< 변경대상 선례 예시 >

- 조합장이 소속 조합원들에게 조합장의 직·성명(사진 포함)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조합 또는 개인의 경비로 발송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음. 다만, 조합장선거의 후보자인 조합장이 **선거기간 중** 발송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, 제66조 위반(2020. 1. 20. 회답)
→ 조합장이 **(예비)후보자 등록 이후** 발송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법 제24조, 제24조의2, 제66조에 위반될 수 있음.
-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**선거기간 전에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경우** 개최일정 등 통상적인 홍보사항을 안내·고지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다수의 조합원에게 초청장 등 인쇄물, 문자메시지, 전자우편으로 보내거나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음(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례정비 및 법규운영기준).
→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**(예비)후보자 등록 전에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경우**...(이하 생략)
- 조합이 **선거기간 전에** 선거와 무관하게 조합의 경비로 조합의 운영, 사업수행, 재난·재해 안내·고지 등 직무상 행위의 일환으로, 조합장의 직명·성명·사진을 게재하여 조합원에게 통상적인 내용의 안내장 등 인쇄물 또는 문자메시지·전자우편(음성·화상·동영상 등 포함)을 보내거나,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거나, 조합원에게 조합장 명의의 ARS 전화를 할 수 있음(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례정비 및 법규운영기준).
→ 조합이 **해당 조합장의 (예비)후보자 등록 전에**...(이하 생략)

선거운동의 주체 확대

2. 법 제24조 제1항 및 제24조의2 제7항에 따라 지정된 (예비)후보자의 선거운동원[(예비)후보자가 그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·회원 중 지정하는 1명을 말함. 이하 같음]이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소정의 수당·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

⇒ 선거운동원에 대해서는 수당·실비의 지급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지급하는 경우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법 제35조, 제37조, 제58조에 위반될 수 있음.

3. '법인·단체'인 금고 회원을 법 제24조·제24조의2에 따른 선거운동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

⇒ (예비)후보자는 '법인·단체'인 금고 회원을 선거운동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선거운동의 행위자는 법인·단체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그 대표자임.

선거운동의 방법

4. (예비)후보자등[(예비)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을 말함. 이하 같음]은 위탁단체가 개설·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글·영상 게시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

⇒ (예비)후보자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 중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·대화방 등에 글·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, 이 경우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는 위탁단체가 개설·운영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음.

5. (예비)후보자등이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'보이는 컬러링' 서비스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

⇒ (예비)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에 '보이는 컬러링'을 이용하여 발신자의 휴대전화 화면에 (예비)후보자의 신분, 성명, 기호,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송출하는 것은 법상 제한되지 않음.

6. (예비)후보자가 해당 금고가 개최하는 '총회' 및 '대의원회'에 방문하여 정책을 발표할 수 있는지

⇒ (예비)후보자는 새마을금고법 제12조에 따른 '총회' 및 제16조에 따른 '대의원회'에 방문하여 자신의 정책을 발표할 수 있음.
※ 그 외 금고의 각종 행사의 경우 개최 주체, 목적, 진행내용, 참석대상 등 행사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.

7. 금고가 예비후보자등의 명함 배부가 가능한 공개 행사장을 반드시 공고하여야 하는지(행사장의 범위 포함)

⇒ 금고는 예비후보자등의 명함 배부 가능 장소인 '위탁단체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'(법 제24조의2 제7항 제2호)을 그 방법에 관계없이 예비후보자등이 알 수 있는 공평한 방법으로 공고(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3항) 또는 공개(위탁단체의 홈페이지 등)하면 될 것임.
※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행사장: 명함 배부가 제한되지 않는 장소 중 위탁단체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

기부행위 제한 등

8. 금고 이사장 명의의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는지

⇒ 금고가 법령이나 금고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, 금고 이사장 명의의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법 제33조에 따라 가능함.

9. 이사장이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·수지예산에 따라, 금고의 명의임을 밝히면서 금고의 법인카드를 직접 결제하거나 회원에게 생일 선물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지

⇒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·수지예산에 따라 이사장이 금고의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금고 명의를 밝혀 금품을 제공할 수 있음.

⇒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·수지예산에 따라 금고 명의의 생일 선물을 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사장이 직접 전달하는 것은 가능함.

※ 다만 이사장이 주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등 금품제공의 효과를 이사장 개인에게 돌리려는 행위가 부가되는 때에는 법 제35조·제59조에, 선거운동을 위하여 회원의 집을 방문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법 제24조, 제31조, 제38조, 제66조에도 각 위반됨.

10. 회원의 관혼상제에 제공되는 금고의 축·부의금품과 관련하여, 이사장이 그 관혼상제 의식에 참석하여 직접 전달할 수 있는지

⇒ 금고가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·수지예산에 따라 축·부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, 금고의 명의로 금고의 경비임을 명기하고 금고가 제공하는 것임을 명확히 밝혀 이사장이 직접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법상 제한되지 않을 것임.

※ 다만 금품 제공의 효과를 이사장 개인에게 돌리려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법 제35조, 제36조, 제59조, 제66조에 위반될 수 있음.

투표참여 권유활동

11. (예비)후보자의 가족이 자신의 명의를 나타내어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는지

⇒ 선거운동원으로 지정된 (예비)후보자의 배우자·직계존비속의 경우 그 지정된 사람은 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으나, 그 밖의 가족이 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법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수 있음.

※ 지정된 선거운동원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(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회원 중 지정하는 1명)에도 그 명의로 투표참여 권유활동 가능

본 운용기준은 구체적 사안을 전제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인바, 구체적인 행위양태 등에 따라 위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.